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 안 번 호	25316

동의연월일 : 2023. 11. 9.
동 의 자 : 박주민 의원 등 168인

주 문

2023년 11월 9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

동의이유

가. 2022년 12월 2일 제400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23년 3월 21일 본회의 부의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2023년 4월 28일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

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름.

나. 이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 19대부터 21대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여야를 바꿔 가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왔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방송 3법'은 특정 정치집단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이사 숫자를 늘리자는 내용과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처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서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공통의 주장을 담은 법안임.

라. '방송 3법'은 수십 년간 이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논란을 종

식시키고, 방송을 정권의 품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여 법원의 철퇴를 맞고, 공영방송 사장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강제로 해임하여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음.

마. 따라서 2023년 11월 9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